

● OECD – BEPS프로젝트 Action 6 관련 상호검토 문서 발표

- OECD는 2017년 5월 29일 BEPS프로젝트 Action 6 관련 최소기준 이행 여부 평가를 위한 국가 간 상호검토(peer review) 문서를 발표함¹⁾

- BEPS프로젝트 참여국의 상호검토(peer review)는 BEPS프로젝트의 15개의 Action 중 최소기준(minimum standards)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에 대하여 참여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임
 - Action 5: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, Action 6: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, Action 13: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, Action 14: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최소기준에 해당함

- 상호검토 문서는 상호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 국가의 권한과 검토 방법론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

- 검토 국가의 권한(terms of reference)은 최소기준 이행의 평가 대상을 제시하며, Action 6 관련 검토 대상으로는 조세조약 서문(preamble) 개정과 조약 남용방지 규정 도입 등이 있음
 - 방법론(methodology)은 상호검토 수행국가와 검토시기 관련 지침을 제시하며, Action 6 관련 이행사항 검토는 BEPS 참여국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수행하되, 2018년 6월 30일까지 검토를 완료하도록 함

〈자료 수집 및 정리: 홍민옥 회계사〉

1) OECD

(http://www.oecd.org/ctp/beps/oecd-releases-peer-review-document-for-assessment-beps-action-6-minimum-standard.htm?utm_source=Adestra&utm_medium=email&utm_content=OECD%20releases%20peer%20review%20document%20for%20assessment%20of%20the%20BEPs%20Action%206%20minimum%20standard&utm_campaign=Tax%20News%20Alert%202017&utm_term=de, 접속일: 2017.06.19.)